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4. 3. .

발 의 자 : 임희도 의원

1. 제안이유

노후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집수리 지원사업의 종류와 집수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다. 집수리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노후된 단독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택개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집수리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